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금율(%)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월 이용한도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643,700

3)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의 준수
- ④ 어르신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⑥ 기타 센터의 협조사항 이행

2) 센터의 의무

-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③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 해지

- 1) 수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센터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2)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재계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7. 이용절차

-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지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 3) 방문요양서비스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또는 보호자가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한다.